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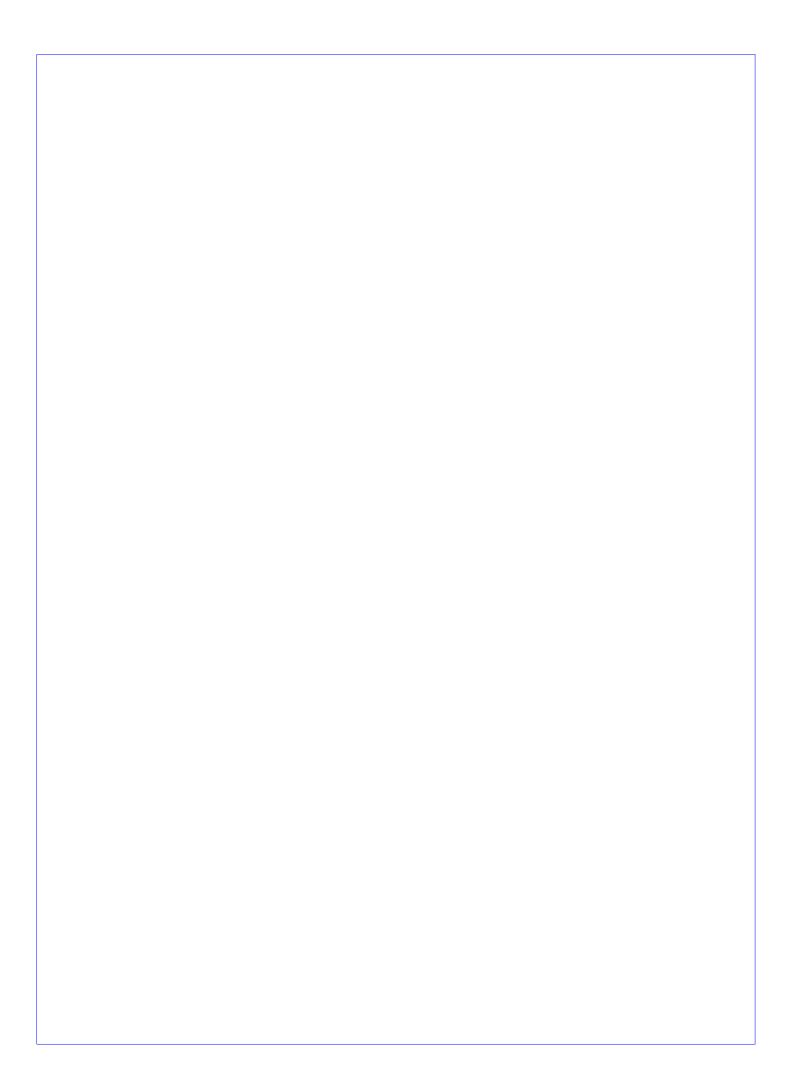


2024. 2. 22.[목] 17:30

봉개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

통장협의회 2월 임시회의

<u>그러</u> 제 주 시 [봉 개 동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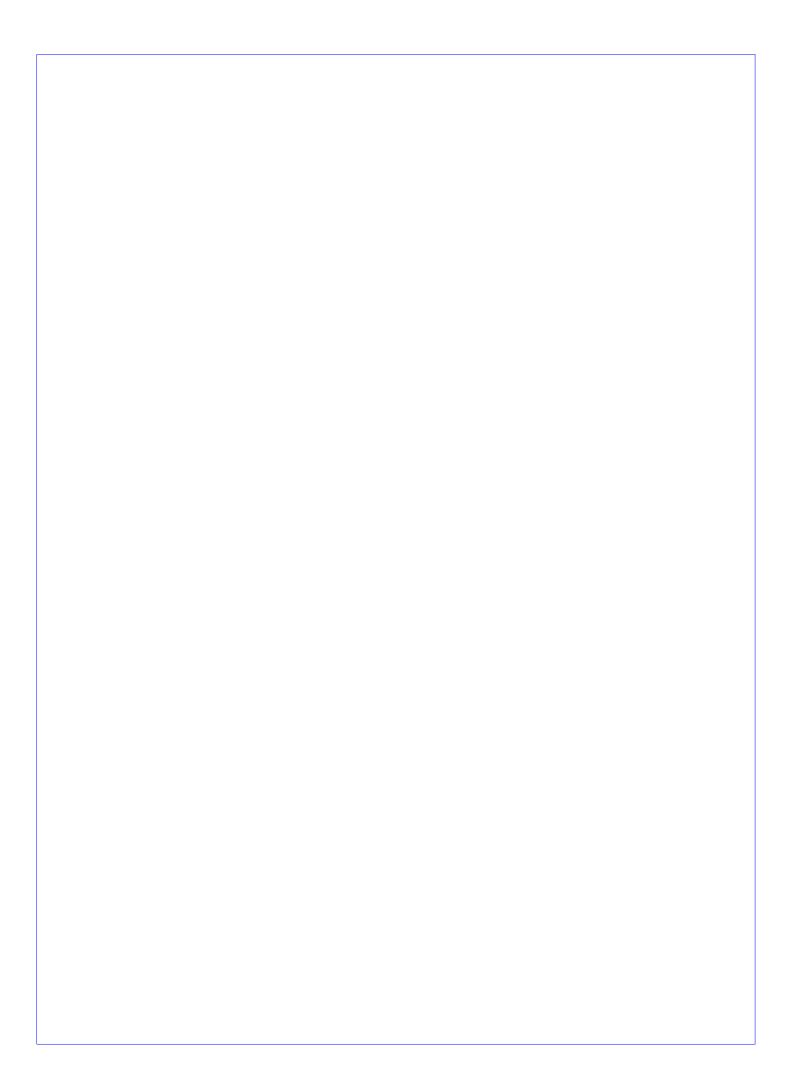
목 차

주민자치팀 소관

: 요청1	신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 사전 의견수렴 협공	1.
3	2024년 농촌현장포럼 참여 희망마을 신청 안내	2.
····· 4	제7기 봉개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구성 계획	3.
5	2024년도 제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 안내	4.

복지환경팀 소관

1.	기본형	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홍보 및 경작확인서 발급 협조	6
2.	2024년	농민수당 지급사업 안내	8
3.	2024년	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 안내	9



주민자치팀 소관

1 신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 사전 의견수렴 협조 요청

(주민자치팀 현가현 ☎728-4752)

□ 도로명부여 개요

○ 관련법: 「도로명주소법」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, 제10조

○ 대상구간: <u>2건</u> (*제주시 봉개동 2081~봉개동 2314-2 외 1건)

○ 의견제출기한: 2024. 3. 8.(금)

□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(안)

1. 신규 도로구간 (봉개동 2081 ~ 봉개동 2314-2)

- 도로명(안): 봉영로 * 기타의견이 있을 시 도로명과 그 부여사유를 제시

- 도로명 부여 사유: 봉개동에서 영평동까지 연결된 도로 의미부여

연번	시작지점	끝지점	길이 (m)	제원 폭원 (m)	위계 (m)	해당구역 (통)	비고
1	봉개동 2081	봉개동 2314-2	795	25	로	2통, 3통	
도면		아보로 	3/HR62	봉영로	→ ZI (L=795m)	범 실제	2081 구간 구간

2. **신규 도로구간** (봉개동 1505-20 ~ 봉개동 1382)

- 도로명(안): 진목4길 * 기타의견이 있을 시 도로명과 그 부여사유를 제시
- 도로명 부여 사유: 옛부터 유래되어 오는 지역 고유명칭을 일련번호 방식으로 부여

연번	시작지점	끝지점	길이 (m)	제원 폭원 (m)	위계 (m)	해당구역 (통)	비고
2	봉개동 1505-20	봉개동 1382	350	10	길	3 통	
도면		ALG. Z.	중산간동로 전목2건	ATE ETZ!(L			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

□ 협조사항

○ 신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 관련으로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.

참고. 도로명 부(p.변경(안)0	∥ 대한 의견서			
신청인	,	성 명		생년월일	
(대표자)	į	주 소	(☎ (ឝੌ	대폰) :)
r 크 H	이 권	도로명			
도로명	의 견	도로명			
의견제출 사 유					
			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: (서명 제주시장 귀하	를 또는 인)	

2 2024년 농촌현장포럼 참여 희망마을 신청 안내

(주민자치팀 김홍자 ☎728-4741)

2024년 농촌현장포럼 대상 마을 선정안

농촌현장포럼 이란?

- ①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,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임.
- ②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지원(신청)을 위한 사전 절차임

□ 사업 개요

- O 운영기간: 2024. 4월 ~ 12월
- 선정마을: ①읍면단위내 리단위, ②동단위내 농어촌고시지역 자연마을 중 7~8개 마을
- 지원내용: 마을 발전 과제 선정, 자원 조사 및 맞춤 교육 → 마을발전계획 수립

(사전조사)		(1회차)		(2회차)		(3회차)		(4회차)		(보고서 작성)
마을자원 조사 및 주민역량분석	•	주민역량 강화교육	•	마을테마 발굴 워크숍	•	마을발전 과제 발굴 워크숍	•	비전체계도 구체화	•	마을발전 계획보고서 작성

○ 운영방법: 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운영

□ 대상 마을 선정 기준

- 1순위: 농촌현장포럼 경험이 없는 마을 및 최근 5년(2019년 ~ 2023년) 이내 농촌 현장포럼 미이수 마을
- 2순위: 제주형 마을만들기 지원 자격이 안되더라도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싶은 마을

□ 향후계획

- (2024. 3월) 희망 마을 접수(3. 4.한) → 선정마을 통보(3. 7.한)
- (2024. 4월 ~ 11월) 농촌현장 포럼 운영 → 마을발전공유회 운영(12월)

<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>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업

- ▶ 지역내 기초생활기반확충 + 소득증대 + 경관조성 +역량강화사업
- ➤ 자율개발사업(3년·5억), 종합개발사업(5년·10억), 제주다운복원사업(5년·20억)

3 제7기 봉개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구성 계획

(주민자치팀 고은정 ☎728-4759)

□ 추진 및 구성개요

- O 2024. 3. 20. 제6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7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구성 계획 및 모집공고 추진 필요
- O 구성인원
 - (추천)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/3 (8명)
 - (추천)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/3 (8명)
 - * 추천자가 반드시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
 - *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며 5, 6기 연임한 경우 7기 위촉 불가
 - (공개모집)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1/3 (8명)
 - ※ 남녀성비 준수: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 제2항에 의거 특정 성별 공개모집 위원 수의 60% 이내 구성 (신청자의 특정성비가 40% 이상되지 않을 경우 우선 선발 될 수 있음)
 - **※** 청년(만19세~39세) 구성 비율 준수 : 전체 구성원의 10%(2명) 미달 시 우선 선발 될 수 있음
 - * 선정방법: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 (단,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)
 - * 추첨방법: 동장, 주민자치위원장, 통장협의회장 등 3명 이상 참관인 구성
- O 임기: 2024. 3. 21. ~ 2026. 2. 28.

□ 추진일정

- O 공모위원 공개모집 및 접수: 2024. 2. 16. ~ 2024. 3. 2.(15일)
-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협의회 추천 접수: 2024. 3. 13.(수)한
- 공개모집 접수에 따른 심사 및 선정: 2024. 3. 15.(금)한
- O 제6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회의개최: 2024. 3월중(예정)
 - 주요내용: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, 위원장 호선, 지역회의 임무 안내 등
 - 일시/장소: 2022. 3월 / 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

□ 협조사항

O 통장협의회에서는 제7기 봉개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인원 추천 및 공개모집 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 2024년도 제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 안내

(주민자치팀 유옥선 ☎728-4743)

□ 개 요

○ 대회기간: 2024. 4. 19.(금) ~ 21.(일), 3일간

O 개최장소: 서귀포시 일원 (주경기장-강창학종합경기장)

O 경기종목: 읍·면·동 대항 12종목

배구, 배드민턴, 볼링, 수영, 씨름, 야구소프트볼, 육상, 축구, 탁구, 테니스 민속경기(줄다리기, 줄넘기)

○ 종 별: 12세·15세·18세이하부, 일반부(읍·면·동, 동호인클럽), 재외도민

○ 참가신청 기간: 2024. 2. 23.(금) ~ 3. 5.(화) 18:00까지 (전산 마감)

□ 읍·면·동별 종목 참가 기준 [2023.1.31.]

읍·면·동별	세대		등록인구		차기조모
급인경원	/ 141	합계	남	व्	참가종목
제주시	222,600	492,817	246,309	246,508	
봉개동	2,415	5,251	2,736	2,515	3종목이상

※ 종목 참가 기준(인구 비례)

- 2만명 이상 : 5종목 이상

- 2만명 미만 ~ 5천명 이상 : 3종목 이상

- 5천명 미만 : 2종목 이상

※ 2023. 제57회 도민체전 참가종목

배드민턴(남10), 육상(400mR 남2/여2), 줄넘기(민속경기 남9/여7)), 씨름(개인전 남1/여1)

□ 협조사항

O 많은 참여와 홍보바랍니다.

복지환경팀 소관

1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홍보 및 경작확인서 발급 협조

(복지환경팀 양철준 ☎728-4746)

□ 사업개요

- 신청기간: 2024. 2. 1 ~ 4.30
 - (2.1 ~ 2.29): 비대면 간편신청(문자메시지 수신시 링크접속 신청)
 - (3.4 ~ 4.30)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 방문 신청
- 지급대상자: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, 농업법인 ※ 단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: 지급제외농지(농지전용신고 등) 사유로 제외될 수 있음
- 대상농지: -종전 쌀·밭·조건불리*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요건충족
 - * (쌀직불) 1998~2000년도, (밭직불) 2012~2014년도, (조건불리직불) 2003~2005년도 -위 농지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 지법 상의 농지
- 지원내용: 지급대상 농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
 - 〈소농〉 농가당 130만원 지급
 - 〈면적〉 경작면적 구간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 적용
 - * 1구간(2ha이하) 134만원, 2구간(2~6ha) 117만원, 3구간(6ha이상) 100만원

□ 2024년 달라지는사항

- O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10만원(120→130만원)
 - 2017~2019년도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제한 조건 삭제
-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경우 "1000제곱미터 이상 농작물 경작이 가능"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로 경작사실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음

□ 협조사항

- 기본형 직불금 **지급대상자가 신청기간 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**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등 <u>경작사실확인서 발급요청 시</u>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





스마트폰 등으로

집에서 간편하게



기간 2.1 ~ 2.29 (1개월간)

[HA]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·농업인

제출서를 없음전산처리

신청발법 스마트폰, ARS

1단계

수신 문자를 확인→접속주소 클릭

•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, 문자 발송

2단계

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

3단계

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

4단계

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

5단계

신청서 제출





옵면동 방문 신청

대면 신청

기간 3. 4. ~ 4. 30.(2개월간 *공휴일제외)

대상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 #신규신청자, 농업법인 등

제출서류

- 신청서(모든 신청자)
- · 경작사실확인서(신규 신청자,관의 경착자,노인장기요양등급 환청자)
-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
- *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· 제출

신청방법 읍면동 방문

1단계

옵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

*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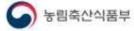
2단계

신청서 작성

3단계

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

(공통) 작불급 신청 이후 경작면적,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, 즉시 농지대장 및 경영제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, 음면등에 방문하여 『기본직접지물금 지금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』를 작성 · 제출하여야 합니다. ◎ 병 제16초제2항 및 제3형의 경우에는 『기본자집지물금』전략작물작집지물금』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』를 작성 · 제출



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지자체

2 2024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안내

(복지환경팀 양철준 ☎728-4746)

□ 사업 개요

- O 사업내용: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·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- 신청기간: (온라인 및 방문신청) 2024. 3. 4.(월)~ 3. 29.(금) (예정)
- O 신청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: 제주특별자치도 (jeju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
-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- 지급대상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으로서
 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,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

< 지급 제외자 >
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사업 전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-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
- 최근 2년 내 농지법,산림관리법,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 행정처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
- 지방세 체납자(단,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)
-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
- 지 급 액: 1인당 연 40만원
- O 지급방법: 지역화폐(탐나는전 카드 충전)
- O 사용기한: 지급일 ~ 2024. 12. 31.까지

□ 2024년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

	현 행('23)	변 경('24)
	지급대상 자격요건 - 2년 이상 농업경영체 계속 유지	· 지급대상 자격요건 - 2년 이상 농업경영체 계속 유지
주요내용	 ▶행정시(읍면동) 건의사항 -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기간 산정시, 미등록 기간 일수 관계없이 말소된 달의 다음달에 재등록시 지급대상 이나, 말소된 달의 다다음달에 재 등록시에는 <u>말소후 재등록한 달이</u> 연속되지 않은 사유로 지급제외 	 ▶행정시(읍면동) 건의사항 수용 - 농업경영체 중간 말소(등록, 갱신 기간 일실 등의 사유)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'복원' 처리 된 경우 지급대상 포함 (별도 증빙 제출)

3 2024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 안내

(복지환경팀 양철준 ☎728-4746)

□ 사업 개요

- O 사업내용: 업도시에 비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
- O 신청기간: (온라인 및 방문신청) 2024. 3. 4.(월)~ 3. 29.(금)
- O 신청장소
- 온라인 신청: 보조금24(http://www.gov.kr)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작성
-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- 지급대상: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(주민등록필수)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연도(2024.1.1.)기준 20세이상~75세 미만인 자(출생일 기준 1949. 1. 1.~2003. 12. 31.출생자)

< 지급 제외자 >

-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지방세 체납자(단,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)
-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
 - 지 급 액: 1인당 20만원
 - **사용기한**: 포인트지급일 ~ 2024. 12. 31.까지
 - -행복이용권사용 가맹점에서 농협카드(체크,신용) 사용시 포인트 우선 차감
 - 사용처:전체업종 포괄 허용
 - -유흥,사행,사이버거래,건강보험 적용 병의원, 대형유통업체 제외

□ 2024년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급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

	현 행(2023)	변 경(2024)
주요내용	○NH농협은행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	○NH농협은행에서 개인별 소지 농협카드(체크,신용)에 포인트 지급
	○카드사용처 45개 업종	○전체업종 포괄허용 단,유흥,사행,사이버거래,건강보험 적용 병의원, 대형유통업체(일 정규모 이상 매출액)제외

MEMO			

<u>그</u>하는 봉개동